



# 인천광역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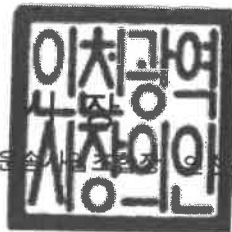
제목 버스전용차로 구간 운행차량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1. 귀 기관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,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와 승객의 안전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그러나, 버스전용차로 구간내 운행차량으로 인하여 버스정류장 무질서 및 버스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,
4. 아래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해 상시(집중)단속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, 운수종사자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교육 등 숙지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단속근거 : 도로교통법 제15조
- 단속대상 : 버스전용차로 구간 운행차량(승객유치를 위한 정차 차량 단속 강화)
- 단속기간 : 연중 상시 단속
- 단속지역 : 인천시 관내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
- ※ 특별단속지역 : 관교동 신세계백화점(인하로, 전일제) 부근 버스전용차로(양방향)

끝.

## 인천광역시



수신자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,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장, 인천시 관내 59개 택시운송업체

주무관 권유상      교통지도담당 김공도      교통관리과장 이길주      전결 2017. 1. 10.

협조자

시행 교통관리과-612      (2017. 1. 10.)      접수

우 21554    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민원동 4층 교통관리과      / <http://www.incheon.go.kr/>

전화번호 032-440-3907      팩스번호 032-440-8501      / [kuup3262@korea.kr](mailto:kuup3262@korea.kr)      / 대국민 공개

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책무입니다.